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29 호
----------	---------

제안연월일 : 2023. 3. 15.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 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수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원의 구금 상태 및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함(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를 “제2조, 제3조 및 제5조”로, “의정활동비를”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u>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 ----- <u>제2조, 제3조 및 제5조</u>----- <u>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 <단서 삭제></u></p> <p><u>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u>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u></p>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